

17.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2년 4월 1일
- 제출자 : 윤영애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태원 의원, 박우근 의원
배지숙 의원, 송영헌 의원, 이만규 의원, 이영애 의원
임태상 의원, 정천락 의원, 홍인표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- 상정일자 : 제29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(2022년 4월 14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윤영애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학생 도박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, 예방교육,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(안 제5조)
-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-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로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온라인을 통한 도박 등에 쉽게 노출되어 학생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 운용의 실효성 및 실질적인 도박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도박 위험대상자 선별 검사 실시·예방교육 실시·치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- 주요 내용으로는
 - ▶ 안 제2조제3항에서, ‘도박 예방교육’의 정의를 규정함
 - ▶ 안 제4조제1항에서, 현행 조례상 5년 단위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스마트기술의 발달 속에서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정함

- ▶ **안 제5조**에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도박 위험 대상자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객관적·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도박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함
- ▶ **안 제6조**에서, 도박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신설함
- ▶ **안 제7조**에서,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적절한 치료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
- ▶ **안 제8조**에서, 교육감이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교육 실시의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학생 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함

○ 검토 결과

- ▶ **본 개정조례안은**,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 도박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대구 지역 학생들의 학생 도박을 예방하고, 도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 및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
- ▶ **특히**,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「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」¹³⁾에 따르면, 우리나라 재학 중 청소년의 2.4%(위험군 1.7%

+ 문제군 0.7%)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, 2018년 실태조사 결과인 6.4%(위험군 4.9% + 문제군 1.5%)보다 적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¹⁴⁾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‘학업/공부’와 ‘여가/놀이활동’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영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해소를 위해 학생이 도박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학생 도박의 예방 교육은 물론 도박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될 시점으로 사료됨

- ▶ 또한,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대구지역 청소년이 카드·화투게임에 참여한 비율은 2018년 3.6%에서 2020년 9.3%로 증가하였고, 특히 문제군의 청소년들의 도박행위에서 온라인의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, 이는 곧 성인이 된 이후의 도박성향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박 예방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
- ▶ 다만, 학생 도박 실태조사 및 도박 위험 대상자 선별검사의 과정속에서 도박 중독자라는 잘못된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의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,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13)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 측정 도구인 CAGI를 활용하여 지난 3개월간 도박 경험 응답을 통해 분류

- 문제군(Red) : 지난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도박 경험을 가진 군
- 위험군(Yellow) : 지난 3개월 동안 1차례 이상 도박 경험을 가진 군
- 위험집단 : 문제군 + 위험군

14)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·등교제한 등으로 도박행동의 사회적 전파경로 감소 및 용돈 감소 등의 영향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